

윤리문제 신고센터 인터넷

www.stryker.com

윤리문제 신고센터 무료 전화번호

국내 전화 (미국, 캐나다: 1-866-263-1439)

국제 전화: 다음 윤리문제 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내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www.stryker.com . 또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T&T 직통 전화

미국과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윤리문제 접수처(EthicsPoint)으로 전화할 때:

1. Stryker 사내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 외부 회선을 이용하십시오.
2. 외부 회선을 이용해 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해당 국가별 전화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3. 영어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이 들릴 것입니다: "AT&T. Please dial the number you are calling now." (AT&T 입니다. 거시려는 전화번호를 지금 눌러주세요.)
4. 전화번호 입력 지시가 나오면 866-263-1439을 누르십시오. 이 번호는 무료 전화 번호입니다. 이 번호 앞에 "1"을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영어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릴 것입니다: "Thank you for using AT&T." (AT&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6. 윤리문제 접수처의 영어 인사말이 들릴 것입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e Stryker Ethics Hotline. (Stryker 윤리문제 신고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ame is (윤리문제 접수처 담당자의 이름). (제 이름은 _____입니다.) How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전화 응답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언어로 통화하시려면, 해당 언어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3분 내에 통역사가 통화에 참여합니다. 그 동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리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할 때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

미국과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윤리문제 접수처로 전화할 때:

1. 국제전화 교환원 번호를 누르십시오.
2. +1-503-352-0872로 수신자 부담 전화(통화료를 수신자가 부담)를 요청하십시오.
3. 수신자 부담 요청은 모두 수락될 것입니다.

Policy Date: 6/8/06

stryker®

Joint Replacements

Trauma, Extremities & Deformities

Craniomaxillofacial

Spine

Biologics

Surgical Products

Neuro & ENT

Interventional Spine

Navigation

Endoscopy

Communications

Imaging

Patient Care & Handling Equipment

EMS Equipment

stryker®

윤리 핫라인 정책

제 10 기업 정책

Copies of all Corporate Policies
may be found on
www.stryker.com/corporatepolicies

2825 Airview Boulevard
Kalamazoo, MI 49002
t: 269 385 2600 f: 269 385 1062

www.stryker.com



목적:

윤리 핫라인 정책을 둘러싼 절차와 지침 약속

범위:

본 정책은 Stryker Corporation 전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설명:

1. 행위. 당사는 동등한 고용 기회, 위협 및 성희롱, 보복 금지 및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활동에 대한 직원 보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 인트라넷에 게재된 당사 동등 고용 기회/차별 수정 계획,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에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법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당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침해할 것으로 사료되는 행위나 활동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차별, 위협, 사기,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행위, 보복, 감사, 내부 감사 통제, 감사 관련 문제 등에 관한 부적절한 행위, 연방 증권법, 증권감독위원회(이하 "SEC")의 법규 또는 기타 주주에 대한 사기 관련 연방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윤리 핫라인 위원회. 본 윤리 핫라인 정책은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법률고문, 인사 담당 부사장, 및 최고 준법책임자로 구성된 윤리 핫라인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위원회는 직원들이 기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윤리 핫라인 윤리 핫라인 이메일 그리고 윤리 핫라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윤리 핫라인과 윤리 핫라인 이메일은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만 접근이 가능하며,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의 부재 시 부사장이 지명한 위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보고.

3.1 직원들은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활동이 의심되는 사항을 당사 윤리규범에 기술된 바와 같이 소속 부서, 자회사, 사업부를 책임지는 사장이나 임원 또는 Stryker의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 인사담당 부사장, 법률고문, 혹은 최고준법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

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활동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 직원들은 해당 행위나 활동을 윤리 핫라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당사 윤리 핫라인 및 윤리 핫라인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3.2 최소한 격일별 영업일로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이나 부사장이 지명한 다른 위원이 윤리 핫라인 및 윤리 핫라인 이메일에 수신된 메시지를 검토하며, 부사장이 관리하는 기밀 대장에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기밀 대장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접수일자
- 연락 전화번호 또는 기타 정보(제공될 경우)
- 제기된 문제의 개요
- 해당 사업 지역
- 확인된 개인 신분(해당될 경우)
- 문제 제기 대상자 및 대상자 회부일자
- 필요 조치
- 후속 조치/해결일자
- 상태

3.3 윤리 핫라인 위원회는 최소한 격월로 회의를 열어 대장에 기록된 사안과 상태 또는 처리를 검토합니다.

3.4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은 적어도 분기마다, 잦은 보고가 요청될 경우에는 이보다 자주 요약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공개 통제 및 절차, 금융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또는 관련 당사자 거래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은 각 사안별로 보고합니다.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을 최고경영자 및 위원회의 기타 위원들에게 전달합니다.

4. 보복.

4.1 당사의 정책은 다음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명백히 금합니다.(1) 선의에서 합법적 목적으로 당사의 누군가가 자행한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고를 독려한 자 또는 조사를 지원한 자, (2) 연방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

이나 법 조적이 증권법, SEC 규칙이나 규정 또는 사기 관련 법률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독려한 자 또는 조사를 지원한 자, (3)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를 독려한 자 또는 제기된 소송이나 그러한 행위와 관련되어 제기될 예정인 소송을 지원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증언을 한 자

4.2 직원이(협박이나 위협을 포함하여) 보복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복 사실을 직속 상관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 직원은 윤리 핫라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직접 보복 사실을 보고하거나 당사 윤리 핫라인에 익명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5. 조사

5.1 직원이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나 활동 또는 본 정책 내에 기술된 보복사실을 보고하면 당사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법적 허용 한도 내의 처리나 기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의 처리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사의 기밀적 성격 때문에 조사나 필요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5.2 모든 조사는 민감하게 처리됩니다. 관련된 모든 중요한 기밀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기밀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될 것입니다.

5.3 당사는 본 정책 하에서 모든 직원 보고를 처리하고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관련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4 당사는 선의로 민원을 보고한 직원의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 내에서 해당 직원을 해고, 좌천, 징직, 협박, 위협하거나 기타 차별을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